

◎ 환경부령 제130호 ◎

대기환경보전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10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을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22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제30조,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35조의2제2항, 제43조 각호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2항·제3항, 제6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60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본문·동조제5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116조제1항 및 제119조의2제1항제1호중 “시·도지사등”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3항, 제36조, 제39조제2항, 제44조제5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제62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4항·제6항, 제63조제2항 및 제116조제2항·제3항중 “시·도지사등”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1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 제60조제2항제4호 및 제119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등”을 각각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122조제2항중 “시·도지사등”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34와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34중 제1호·제3호·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별표 17의 비고란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가”로 한다.

별표 34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제9호 내지 제11호·제14호 및 제15호의 보고자란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동표중 제16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9호의3서식·별지 제20호의2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36호서식·별지 제36호의2서식·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을 각각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의2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의3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을 각각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로 한다.

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 개정(2002. 8. 8. 대통령령 제17703호)되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수출자유지역 등의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환경부령 제131호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10월 1일
환경부장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4조제6호중 “시·도지사등과”를 “시·도지사와”

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 단서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3조 본문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4항중 “시·도지사등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9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중 “시·도지사등이”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46조·제47조 및 제45조를 각각 제45조·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중 “시·도지사등”을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시·도지사등이”를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제8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등록신청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허가신청·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도지사등이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21중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별표 9 및 별표 9의2를 각각 별표 9의2 및 별표 9로 한다.

별표 9(중전의 별표 9의2)의 제목중 “제46조관련”을 “제45조관련”으로하고, 별표 9의2(중전의 별표 9)의 제목중 “제45조 관련”을 “제47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10호 및 제11호의 보고자란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을 각각 “특별시

(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유역환경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을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및 제32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을 각각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이 개정(2002. 8. 8. 대통령령 제17704호)되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수출자유지역 등의 사업장에 대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환경부령 제132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10월 1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등”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7조 각호외의 부분, 제34조제4항, 제35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 및 제45조 후단중 “시·도지사등”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1조제2항 전단·동조제3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50조제2항중 “시·도지사등”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45조의2제1호중 “시·도지사등이”를 각각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중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시·도지사등”을 각각 “국립환경연구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보고) 시·도지사, 국립환경연구원장·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협회의 장이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7중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별표 6중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7 제1호의 보고자란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보고자란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7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독물관리자 및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승인의 현황	연 1회	다음해 15일까지	시·도지사
-------------------------------	------	-----------	-------

별표 7 제6호의 보고자란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중 “화학물질평가과”를 “유해성평가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을 각각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 또는 대행기관검사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위험설비안전센터)”을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또는 대행기관검사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위험설비안전센터)”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화학물질평가과),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을 “국립환경연구원(유해성평가과),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이 개정(2002. 8. 8. 대통령령 제17705호)되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수출자유지역 등의 사업장에 대한 유독물영업 등의 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화학물질 유통량·배출량조사등 전문적 조사업무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88호 ◎

200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 및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되는「200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산업자원부공고 제2001-254호, 2001.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2년 9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1. ~15(현행과 동일)

부 칙

1. ~7(현행과 동일)
8.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의 중소 소수력 발전사업자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된 업체에 한해서는 동 자금지원지침 「6. 대출범위-가. 시설자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비(기전설비 및 토건설비)소요자금의 100% 범위내에서」지원할 수 있다.

◎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2-88 ◎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9월 30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하는 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양하기 위함. 다만, 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2년후에 시행하도록 함.

- 번호 : 1
-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
 - 명칭 : COD연속자동측정기
 - 형식(Model) : K-COD-LAB200
 - 제작국 및 제작회사 : 독일, GIMAT
- 형식승인번호 : WTMS-COD-2002-17
- 승인일 : 2002년 9월 13일
- 비고 : 신규

2. 주요 골자

가.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기구 기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소음발생기계를 정하고 이중 사람의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소음발생기계는 특정소음발생기계로 규정함(안 제2조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나. 소음발생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항).

다.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는 소음허용기준을 정하고, 동 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소음도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49조의3).

라. 소음도 인증을 받고 제작된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마. 소음도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소음도인증을 받지 않은 당해 소음발생기계 및 특정소음발생기계의 제작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5).

바. 소음도 검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 49조의6제1항)

3. 기타문의

전화 : 02-504-9250, FAX : 02-504-5472

◎ 환경부공고제2002-121호 ◎

소음·진동규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존 고소음기계에 대한 소음표시 권고제를 소음발생기계에 대한 소음도표지 부착의무제로 전환하고,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는 소음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소음도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선정기준으로 소음크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저소음기계 사용을 촉진하고, 소음발생기계로 인한 민원발생 및 환경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저소음발생기계를 개발·생산

○ 환경부고시제2002-140호 ○

낙동강수계수변구역지정고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수계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18일

환경부장관

수변구역지정내용

1. 지정범위

○ 대상지역 및 면적

시·도	시·군	면적(km ²)	
울산광역시	울주군	4.98	
	경상북도	포항시	10.34
	경주시	17.17	
	안동시	64.32	
	영천시	10.85	
경상남도	청송군	61.42	
	영양군	27.83	
	청도군	23.87	
	양산시	5.14	
	밀양시	2.85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 이 고시 공고일 현재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1필지가 수변구역 내외에 걸쳐 있고 수변구역 편입부분의 면적이 60㎡이하인 경우 해당 편입 토지 부분

2. 관계도서 : 붙임(관보게재 생략)

○ 수변구역 지정 도면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 현황(지번도)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해당 시·군

○ 환경부고시제2002-141호 ○

금강수계수변구역지정고시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강수계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18일

환경부장관

수변구역지정내용

1. 지정범위

○ 대상지역 및 면적

시·도	시·군	면적(km ²)	
대전광역시	동구	1.58	
	충청북도	보은군	26.53
		옥천군	128.36
충청남도	영동군	28.86	
	금산군	26.61	
	전라북도	무주군	21.32
전라남도	장수군	28.20	
	진안군	111.73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 이 고시 공고일 현재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1필지가 수변구역 내외에 걸쳐 있고 수변구역 편입부분의 면적이 60㎡이하인 경우 해당 편입 토지 부분

2. 관계도서 : 불임(관보게재 생략)

토지 부분

- 수변구역 지정 도면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 현황(지번도)

2. 관계도서 : 불임(관보게재 생략)

- 수변구역 지정 도면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 현황(지번도)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해당 시·군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해당 시·군

◎ **환경부고시제2002-142호** ◎

◎ **산업자원부고시제2002-89호** ◎

영산강·섬진강수계수변구역지정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환경영역체제인증제도운영요령폐지고시
환경영역체제인증제도운영요령고시(산업자원부고시제2001-94호)는 이를 폐기한다.

2002년 9월 18일
환경부장관

2002년 9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수변구역지정내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지정범위

◎ **환경부고시제2002-139호** ◎

○ 대상지역 및 면적

환경부정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시·도	시·군	면적(k㎡)
전라남도	순천시	65.36
	광양시	17.24
	담양군	2.28
	보성군	63.26
	화순군	73.15

2002년 9월 19일
환경부장관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 이 고시 공고일 현재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1필자가 수변구역 내외에 걸쳐 있고 수변구역 편입부분의 면적이 60㎡이하인 경우 해당 편입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요약

1. 제정사유

○ 기업과 관할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한 지역 환경질 개선을 위해 1999년 12월부터 업무편담 형식으로 작성·시행되고 있는 자율환경관리지침서를 조문형식의 운영규정으로 재정비하여 법적근거 강화를 통한 기업 환경오염저감 및 지역 환경질 개선

- 규제일변도의 오염매체별 환경관리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적 환경관리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기업경영 목표 동시 달성

2.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추진경위

○ 자율환경관리제 추진계획 및 지침확정 시달(1999. 12. 11)

- 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등 지시

○ 자율환경관리체제 정착·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999. 12. 31)

-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신설(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제2항)

○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 초안 마련(2002. 6)

○ 해방 실·국 의견수렴(2002. 7. 15~7.31)

○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의견수렴(2002. 8. 1~8. 16)

※ 2002년 6월 현재 8개 기관(환경청 2 시·도 6)이 351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음.

4. 주요내용

□ 기본방향

○ 지역별 환경오염 특성을 감안한 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또는 단체와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관할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

□ 협약대상 기업

○ 지구환경오염물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또는 단체

□ 협약대상 분야

○ 지구환경오염물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

- 협약대상 분야는 1분야 또는 2분야 이상도 가능

□ 협약기업에 대한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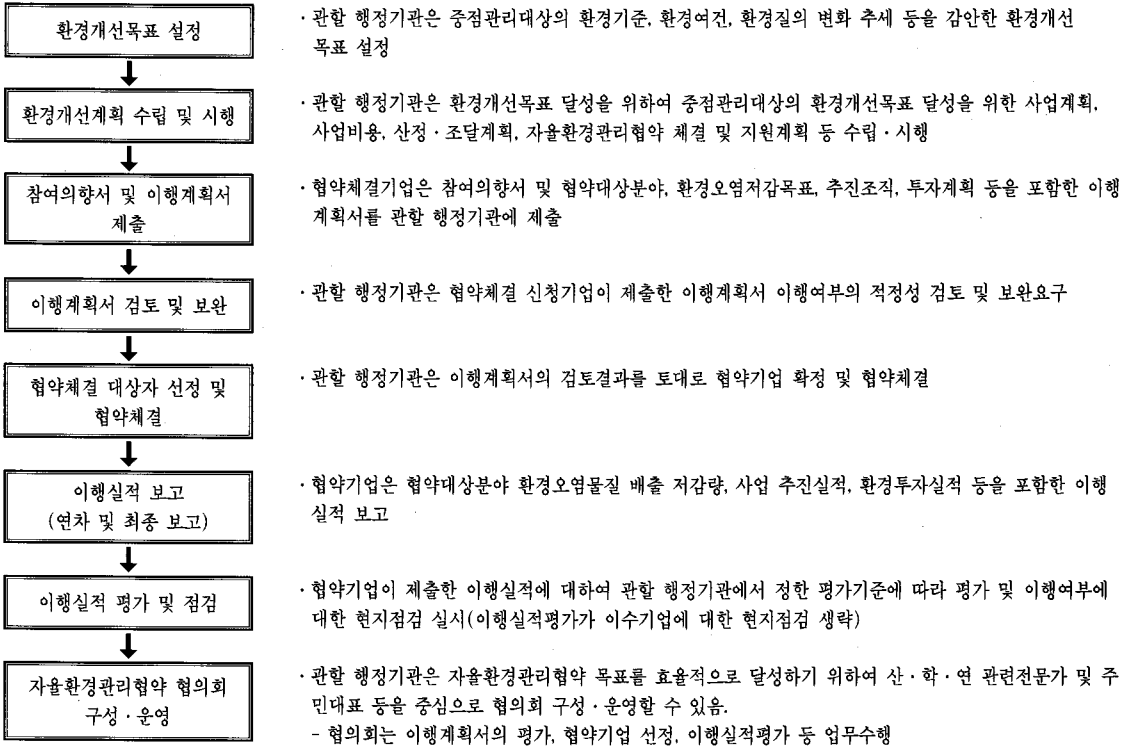
○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 사업장의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 중소기업에 한하여 방지사설 설치자금, 재활용산업 융성자금 등의 우선용자

○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협약대상 분야 심사 면제등 우대

〈단계별 추진절차 및 내용〉



○ 이행계획서 이행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가능

□ 협약위반 기업에 대한 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계획서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행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와 허위보고, 민원 또는 오염사고등을 야기하여 자발적 환경협약체도의 취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약파기 가능

□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기관

○ 환경관리공단,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 소속 지역별 협의회, 기타환경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관할 행정기관에서 자체 기술지원단 구성·운영

□ 기타

○ 관할 행정기관은 동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및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세부운영지침 제정·운영 가능

○ 관할 행정기관은 협약기업에 관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협약 추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관할 행정기관은 협약체결 및 이행실적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

※ 자율환경관리협약 운영규정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참조

◎ 환경부고시제2002-146호 ◎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곡천 하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27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목적

부천시 역곡지역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말처리
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부천시장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56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456-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52,374m²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 명 칭 : 역곡하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 50,000m³/일
- 처리방법 : 질소·인 제거 고도처리공법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 예정배수구역 : 944ha
- 예정처리구역 : 339ha

마. 사업시행기간 : 2003년~200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조

사. 기타 관계서류는 부천시 하수과(032-320-2458)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토지편입조서]- 생략

◎ 환경부고시제2002-148호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성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1994-7호,
1996. 9. 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성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개정

성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
비를 연결한 경우, 당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노말
핵산추출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
규칙 제5조[별표3] 폐수배출시설중 제사 및 방적시
설과 직물직조 및 편조시설을 포함한 표준산업분류
번호(1710, 1720, 1730)에 한하여 동식물 유지류 100m
g/이하, 광유류 25mg/이하로 하고,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
준은 원폐수의 수질에 의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3] 폐수처리배출시설중 산업용
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
시설, 도금시설(주 시설이 도금공정인 시설에 한함)
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화학적산소
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300mg/이하로 한다.

부 칙

◎ 환경부고시제2002-151호 ◎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환경부고시 제1994-7호(1994.9. 6)는 폐지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용자금지원조건등 결정](환경부고시 제2002-104호, 2002.7. 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환경부고시제2002-149호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서산업단지폐수중말처리시설의 노말핵산추출물질의 방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1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특별회계용자금지원조건등결정중개정

2002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별표의 용자조건란중 용자(대출금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성서산업단지폐수중말처리시설의 노말핵산추출물질방류기준

1. 항목 : 노말핵산추출물질 (광유류 및 동·식물유지류)

사업명	지원대상	용자조건			비고
		현행	변경	증감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지자체	4.97% (5.07%)	4.32% (4.42%)	△0.65% (△0.65%)	- 5년거치, 10년 상환
2.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	"	"	"	"	"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	"	"	"
4. 하수관거정비	"	"	"	"	"
5. 농공단지폐수중말처리시설	"	"	"	"	- 3년거치, 7년 상환
6.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만간	4.00% (5.00%)	4.00% (5.00%)	- (-)	- 5년거치, 10년상환 -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7. 재활용산업 육성	시설 및 기술개발 자금	5.07%	4.42%	△0.65%	- 3년거치, 7년상환
	경영안정 및 제품유통·판매	(6.07%)	(5.42%)	(△0.65%)	- 2년거치, 3년상환

2. 방류수수질기준

- 광유류 : 1mg/l이하
- 동·식물유지류 : 5mg/l이하

1. 취급수수료 지급기준 : 용자업부위탁기관 0.1%, 금융기관 0.9%

2. 명시되지 않은 용자사업(1998이후)의 경우 지원 대상에 따라 상기 조건을 준용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환경부고시제2002-153호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하여 환경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교육훈련수수료

과정	교육기간	수수료(원/인)
대기방지시설기술요원반	5일	27,000
수질방지시설기술요원반	5일	27,000
소음·진동방지시설기술요원반	5일	27,000
대기측정기술요원반	5일	37,500
수질측정기술요원반	5일	37,500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부고시 제1997-13호(1997. 2. 24)는 폐지한다.

2002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 전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2-2호 ○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제3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공동처리구역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공단관리사무소(063-261-4378)에 비치하였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002년 10월 9일
전주지방환경청장

전주제3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지정·고시

폐수종말처리시설명칭		전주제3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 처리 구역	대상 지역	당초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구미리·구암리·둔산리·은하리·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
		변경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구미리·구암리·둔산리·은하리·장구리,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
구역	면적	당초	3,416.679㎡
		변경	6,538.311㎡

